지식경제부 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1년 11월 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전략물자관리팀장 박병찬, 김도헌 사무관(02-2110-5327)	

전략물자 강국의 제도를 한자리에서
- 지경부, 「한·미·일 수출통제 세미나」 개최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최중경)는 **2011년 11월 8일** 서울 **코엑스(컨퍼런스룸 203호)**에서 **전략물자 선도국의 제도 소개** 및 **우리 기업의 수출관리 이해 제고**를 위한 「**한·미·일 수출통제 세미나**」를 개최함.

< 세미나 개요 >

◇ **일시·장소 : '11.11.8(화) 10:00~17:00,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**
◇ **참석 : 수출기업** 관계자 등 **100여명**
◇ **주요내용 : (미국) 美수출관리규정(EAR), 수출통제 개혁조치**
(일본) 日제도·정책 동향, 기업 및 연구기관 이행사례
(한국) 자율준수 구축 및 이행사례

○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수출기업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**미·일 정부담당관** 및 **기업관계자**가 연사로 나와 **미국과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와 정책동향 및 기업의 이행사례 등**을 소개함.

* (강사) 미국 상무부 김미영 아태지역수출정책선임분석관
일본 경제산업성 야구치 마이 안전보장무역관리과 과장보좌 등 2명
일본 도레이㈜ 다가와 다카시 안전보장무역관리실장
한국 앰코코리아 정선욱 차장

□ 지식경제부 산하 **전략물자관리원 조성균 원장**은 환영사를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**무역1조불 시대**의 개막을 앞둔 경제강국으로서 **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** 해야 함을 강조하고,

○ **기업 스스로도 엄격한 전략물자관리체제**를 갖추고 전략물자 관련 **무역리스크를 줄이도록 노력**해 줄 것을 당부함.

□ 한편, 이번 세미나는 「**전략물자 주간**」(11.7~11)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, 지식경제부는 금주 중 「**전략기술 관리제도 설명회**」(11.8), 「**한-미 전략물자 식별 워크숍**」(11.10), 「**자율준수기업 워크숍 및 전략물자 골든벨**」(11.11)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임.

붙임1 「한·미·일 수출통제 세미나」 개요

□ 행사 개요

○ **일시 및 장소 : '11.11.8(화) 10:00~17:00,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**

○ **참석대상 : 약 100명**

- **韓(지경부)·美(상무부)·日(경산성)** 수출통제 담당관, 유관부처기관, 전략물자 취급업체, 협화단체, 학계, 연구기관 등

□ 행사 내용

○ 미국, 일본의 **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 및 최근동향**

○ 재수출통제, 기술통제 및 자율준수체제 **이행 절차**

○ 기업 및 연구기관의 **자율준수체제 이행 우수사례**

□ 행사 일정

시 간	주 요 내 용	비고
09:30~10:00	등 록	
10:00~10:05	환영사	전략물자관리원장
10:05~12:00	미국의 수출관리규정(EAR) 소개(Ⅰ)	미국 상무부
12:00~13:30	오찬	
13:30~14:20	미국의 수출관리규정(EAR) 소개(Ⅱ)	미국 상무부
14:20~14:40	Coffee Break	
14:40~16:40	일본의 전략물자 관리정책 및 이행사례 소개	일본 경산성/기업
16:40~17:00	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사례 발표	한국 기업

붙임2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 제도 개요

1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념

○ 「**전략물자**」란 대량파괴무기(Weapons of Mass Destruction; WMD)와 이의 개발·제조·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·기술·소프트웨어

○ 「**전략물자 수출통제**」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**전략물자의 유출을 저지하는 제도로서,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**은 전략물자의 **수출허가**를 통하여 **WMD 확산 통제**

○ **국제수출통제체제**에서 수출통제 **원칙과 통제품목**을 정하고, 회원국은 **자국법에 반영**하여 통제 (우리나라는 4개 체제 모두 가입)

<국제수출통제체제>

핵무기	생·화학무기	미사일	재래식무기
NSG[1] ('78)	AG[2] ('85)	MTCR[3] ('87)	WA[4] ('96)
46개 회원국 ('95가입)	41개 회원국 ('96가입)	34개 회원국 ('01가입)	40개 회원국 ('96가입)

2 전략물자 수출통제 동향

○ 9.11테러 이후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**국제안보의 핵심현안**으로 대두

○ **UN 안보리결의 1540호**('04.4)를 통해 전략물자 **수출통제제도**는 **국제 규범화**되었고, 각국은 이행과 처벌을 의무화

○ 수출통제를 위반한 기업·대학·연구소 등은 **거래부적격자(DL)**[5]에 등재되어 **무역제한, 대외이미지 실추** 등 **글로벌 경쟁력 저하 초래**

1) 핵공급국그룹(NSG : Nuclear Suppliers Group) : 원자력 물자 관련 통제
2) 호주그룹(AG : Australia Group) : 생화학무기 관련 통제
3) 미사일기술통제체제(MTCR :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) : 미사일 관련 통제
4) 바세나르체제(WA : Wassenaar Arrangement) : 재래식 무기·이중용도 품목 관련 통제
5) 거래부적격자 명단(DL : Denial List)

3 우리나라 제도 및 운영 현황

□ 개 요

○ '87년 **대외무역법**시행령에 도입, **'03년 상황허가(Catch-All)** 제도 시행
* 국제체제 가입 : NSG('95), AG('96), WA('96), MTCR('01)

○ '05.2월 **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개통** : 판정·허가 온라인 서비스

○ '07.6월 전략물자관리 지원 전문기관인 **「전략물자관리원」 설립**
* 전략물자 판정, 온라인 시스템 운영, 교육·홍보 및 국제협력 등 지원

□ 우리나라 제도 주요내용

○ **(전략물자 고시)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·기술 등**을 지식경제부에서 고시

○ **(전략물자 판정)**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기업 스스로 판정(자가판정)하거나, **전략물자관리원**에 의뢰하여 **판정**(사전판정)

○ **(수출허가) 전략물자는 관계행정기관의 허가**를 받아 수출

○ **(상황허가)** 전략물자 아닌 물자도 WMD 제조 등에 사용 우려시 허가

○ **(자율관리)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**하여 허가 면제 등 혜택

○ **(벌칙)** 수출허가 등 위반 시 **7년 이하 징역**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의 벌금과 **3년 이내 무역제한**

□ 수출통제 운영 현황

○ 우리나라는 최근 시스템 구축, 제도개선 등 **모범이행 국가로 인식**되도록 하는데 **최선의 노력 경주**

○ 수출통제 중요성에 대한 홍보, 교육 및 이행 지원으로 **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지속 개선 추세**
* 전략물자관리제도 인지도(%) : ('08) 78.2 → ('09) 83.5 → ('10) 85.3